

## CONTACT



외국변호사 한윤준

T: +84.28.3827.3886  
E: [younjoon.han@leeko.com](mailto:younjoon.han@leeko.com)



외국변호사 홍성미

T: +84.9.4183.6655  
E: [sungmee.hong@leeko.com](mailto:sungmee.hong@leeko.com)



변호사 김희웅

T: 02.772.4428  
E: [heewoong.kim@leeko.com](mailto:heewoong.kim@leeko.com)

## 베트남 법령 업데이트

### 1. 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베트남 정부는, 2020. 3. 30. 투자법(Law on Investment)에 관한 시행령(No. 118/2015/ND-CP)상의 인센티브 대상을 보완하는 시행령(No. 37/2020/ND-CP, 이하 ‘Decree 37’)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령은 2020. 5. 15. 발효되었습니다.

Decree 37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법(Law on Supporting SMEs)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투자 활동이 인센티브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Decree 37은 중소기업 및 혁신 스타트업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 확대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인센티브 대상 투자 활동
① 중소기업 제품의 유통과 관련된 사업 투자
② 중소기업 인큐베이션에 필요한 기반 여건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육성 시설 및 설비 관련 사업 투자
③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 설비(제품 설계, 평가, 분석, 검수 관련 설비 포함) 관련 사업 투자
④ 혁신적인 스타트업에 대한 작업 공간 제공 및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 투자

중소기업 지원법은 자금 지원,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SME Credit Guarantee Fund)을 통한 신용 보증, 세금 및 회계 관련 지원, 기술지원 및 시장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일반적인 우대정책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Decree 37의 발효로 상기 중소기업 및 혁신 스타트업 기업들도 투자법 및 기존 Decree 118에서 규정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센티브 규정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 투자자 역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인허가 절차 및 준수 사항에 관한 시행령 공포

베트남 정부는 2020. 4. 27.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No. 52/2020/ND-CP, 이하 ‘Decree 52’)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령은 2020. 6. 15. 발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경우 Decree 52상의 각종 제한 사항을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Decree 52는 베트남 투자법에서 골프장을 건설 및 운영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사전에 총리의 투자정책결정(investment policy decision)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을 보완하여, 골프장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투자정책결정 및 투자등록증(IRC) 발급에 관한 인허가 절차 및 관련 준수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i) 골프장 건설이 제한되는 토지, (ii) 골프장 영업을 위한 건설 등에 관한 조건 및 (iii) 골프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자에 대한 조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 3. 베트남 중앙은행, 시중 금리 인하 결정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2020. 5. 12.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하여 주요 시중 금리를 재조정하는 3개의 결정문을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3월에 이어 리파이낸싱 금리(refinancing rate), 중앙은행 할인율(discount rate), 레포(Repo)금리 및 각종 대출금리 등이 추가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SBV 결정에 따라 인하된 주요 시중 금리	
리파이낸싱 금리(refinancing rate)	연 5.0%에서 4.5%로 인하
중앙은행 할인율(discount rate)	연 3.5%에서 3.0%로 인하
레포(Repo)금리	연 6.0%에서 5.5%로 인하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의 VND 정기예금에 대한 최고 변동 수신금리	연 4.75%에서 4.25%로 인하
인민 신용 기금 및 소액 금융 기관의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의 VND 정기예금에 대한 최고 변동 수신금리	연 5.25%에서 4.75%로 인하
신용 기관 및 외국 은행 지점이 적용하는 VND 단기 대출 최고 금리	연 5.5%에서 5.0%로 인하
인민 신용 기금 및 소액 금융 기관의 VND 단기 대출 최고 금리	연 6.5%에서 6.0%로 인하

### 4. 교육 분야의 국제 협력 및 투자에 관한 시행령 공포

베트남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 'MOET')는 2020. 3. 18. 교육 분야의 국제 협력 및 투자에 관한 시행령(No. 86/2018/ND-CP, 이하 'Decree 86')의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No. 04/2020/TT-BGDDT, 이하 'Circular 04')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규칙은 2020. 5. 5. 발효되었습니다.

Circular 04는 베트남과 외국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교육 커리큘럼에 관하여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 교육 커리큘럼은 Decree 86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요건(통합 커리큘럼 교육 단체 적격, 물적 시설, 교직원, 학업평가 관련 조건 등)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통합 커리큘럼 준수 요건
① 통합 커리큘럼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해야 하고, 베트남 내에서의 수행 조건에 부합해야 함;
② 통합 커리큘럼의 내용과 기간은 대상 학생의 연령에 적합해야 하고, 베트남의 전통과 관습에 부합해야 하며, 성별, 민족, 종교,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배제해야 함;
③ 통합 커리큘럼은 교육 방법, 형태 및 교육 결과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학교 교육 계획 수립의 기초를 제공해야 함;
④ 통합 커리큘럼은 커리큘럼의 수행, 관리 인원, 강사 및 기타 직원, 시설 및 교육 장비를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명시해야 함.

## 5. 해외 파견 베트남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 공포

베트남 정부는 2020. 4. 3. 해외 파견 베트남 근로자에 관한 법률(Law on Vietnamese Guest Workers)의 일부 조항을 세부 규정하는 시행령(No. 38/2020/ND-CP, 이하 'Decree 38')을 공포하였고, 본 시행령은 2020. 5. 20. 발효되었으며, 이로써 기존 시행령(No. 126/2007/ND-CP, 이하 'Decree 126')은 Decree 38로 대체되었습니다.

Decree 38은 기존의 Decree 126과 비교하여 해외 인력 파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력 파견 서비스 제공 업체 유형
① 해외 인력 파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기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파트너십 회사로 함;
② 대상 회사는 최소 정관 자본금 요건(50억 VND 이상; 한화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회사의 소유자, 사원, 주주는 투자법에 따른 베트남 현지 투자자여야 함(본 조항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파견 서비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그 밖에도 Decree 38은 베트남 근로자가 가장 많이 파견된 대만, 일본, 중동 지역 국가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마련하여, 베트남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베트남팀(Lee & Ko Vietnam Practice Group)**은 현지에서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 각 사무소를 개설하여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에 거의 빠짐 없이 참여해 오고 있으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로펌 가운데 현지에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베트남팀은 베트남 진출 자문과 관련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적 부분만이 아닌 사업 관련 실무 이슈나 처리 절차의 관행까지 고객이 궁금해할 수 있는 각종 사항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